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81
----------	-------

발의연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박대수 · 김용관 · 지성호
안병길 · 김희곤 · 이주환
김선교 · 곽상도 · 이종배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위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변경보고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

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또한,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의무 위반의 실질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더 충실한 규제 체계를 구현하고 상·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래에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8조제3항).

나.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다.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시 배출가스량 증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중요사항 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안 제94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

라. 현행법 제91조제4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로 규정하므로, 변경보고 제도를 제48조제2항의 변경인증과 별도로 제48조제3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변경보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받은”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48조에 따라 인증,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2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생략)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u>사항</u> 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u>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요사항”이라 한다)</u> ----- -----.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u>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u>
	2. <u>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u>인증방법</u> , 인증의 면제·	⑤ ----- <u>제4항</u> ----- ----- ----- --- <u>인증방법, 변경보고</u> -----

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 (생략)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생략)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5항-----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 받거나 변경 보고를 한 -----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 제48조에 따라 인증,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한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 ----- ----- ---
<신설>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8조제4항----- ----- -----
1의3. ~ 2. (생략)	1의3.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3의3. (생략)	3의3.·3의4.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	----------------